

선	기관의 장
람	



제 693 호

2006년 6월 9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64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85호(차령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 예고)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87호(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88호(공시송달공고(2005년하반기민방위교육의무위반 과태료납부고지서))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97호(IP관리및OS패치관리시스템구입긴급입찰공고) ..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699호(장기미반환자동차매각공고)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00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학교시설사업(만수고등학교신설사업)]) 23

회								
람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6월 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64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구정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정소식지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구정소식지(이하 “남동마당”이라 한다)”를 “구정소식지”로 한다.

제2조 중 “남동마당”을 “구정소식지(이하 “남동마당”이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원고료 지급)”을 “(원고료 등 지급)”으로 하고,

제6호중 “특별취재원고 편당 70,000원”을 “특별취재원고 편당 80,000원”으로 하고, “취재기자 수첩 편당 50,000원”을 “취재기자 수첩 편당 40,000원”으로 하며 “제7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진 : 20,000원(내지)

8. 만화 : 150,000원(1페이지) • 50,000원(만평)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6월호부터 적용한다.

☐ 제안이유

- 남동마당의 격월 발간으로 페이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구민참여 원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 기존 원고료의 적절한 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기존 원고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7조(원고료 등 지급)

- 6. 특별취재원고 편당 70,000원을 80,000원으로, 취재기자 수첩 편당 50,000원을 40,000원으로 조정
- 7. 사 진 : 20,000원(내지)
- 8. 만 화 : 150,000원(1페이지) • 50,000원(만평)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85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06. 19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06. 05 ~ 2006. 06. 19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2더7631	이승철	부평구 십정동179-48	인천지방법원 (97카단28413)	강신복	남동구 만수동 397번지 신대방(아)5-103호
			인천지방법원 (98카단6897)	문종섭	남동구 만수동 109-64호
			인천지방법원 (98카단35508)	김경호	남동구 만수동 5-397호 대동(아)2-106호
			인천지방법원 (98카단42146)	권윤남	남구 주안동 1452-2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32)

2006. 06. 0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8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제정되어 '0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6. 25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문화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453-213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법·제정되어 '0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개정
- 출연금의 한시적 출연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 추가(안 제6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을 구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안 제11조제3항, 안 제13조제3항)

☐ 본 문 : “붙임참조”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의”로 하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중 “기금”을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매년 적정금액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1/3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동조 제5항중 “문화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을 “기금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6조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제1항중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을”을 “기금운용계획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지출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문화홍보실장”을 “기금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문화예술담당”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15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또는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의 -----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 예술진흥기금을 ----- -----.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인천광역시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 조성액은 10억원으로 하 고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연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남동구 일 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② ----- ----- 매년 적정금액을 -----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 구성하되, 제 4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1/3이상으 로 하여 구성한다.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⑤위원회에는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u>문화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u>	⑤ ----- ----- <u>기금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u>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u>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기금의 지출, 결산에 관한 사항</u> <u><신설></u> 3. <u>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u>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1. <u>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2. <u>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u> 3.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4. <u>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u>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u>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 ----- <u>사업계획수립 및 결산 등을</u>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기금운용계획은 -----	② ----- 기금운용계획은 -----	② ----- 기금운용계획은 -----
<신설>	<신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신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지출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지출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지출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기금결산) ① (생략)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책임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홍보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4조 ~ 제16조(생략)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회계책임자) ① ----- ----- ----- ----- 기금관련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5조 ~ 제17조(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류의 명칭 : 2005년 하반기 민방위교육의무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

서류의 내용 : (별첨)

대 상 : 심재형외21명(명단별첨)

공시송달공고기간 : 2006. 6. 15 ~ 6. 30

2005년 하반기 민방위교육의무를 위반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6조의2(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부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4조(공고에 의한 납입의 고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고하오니 2005년 하반기 민방위교육의무 위반자께서는 본 구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시어 시중은행, 농협, 수협, 축협 및 새마을금고등에 2006. 7. 2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6.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심재형	700315-*****	남동구 구월1동 201-109 영송주택 B02호
2	오찬호	710813-*****	남동구 구월1동 1224-4 성진빌라 301호
3	김요진	710823-*****	남동구 구월3동 1096-8 세민타운-201호
4	임범상	741228-*****	남동구 구월3동 1098-15 104호
5	김형남	710907-*****	남동구 구월4동 1279-22 101호
6	전종복	731118-*****	남동구 구월4동 349-458 공간빌라 202호
7	김동수	730518-*****	남동구 간석1동 328-12 유명빌라 B-401
8	임동열	700515-*****	남동구 간석3동 224-754 뉴파크빌리지 6-B01
9	이기연	710603-*****	남동구 간석3동 95-6
10	강수일	710103-*****	남동구 만수1동 삼환아파트 105-108
11	김낙진	710302-*****	남동구 만수1동 980-10 우림다세대 2/202
12	이원남	710407-*****	남동구 만수1동 963-2 건양그린타운 나/201
13	윤상빈	731115-*****	남동구 만수1동 953-26 아트다세대 2/101
14	이재우	801021-*****	남동구 만수1동 965-4 금호주택 1/402
15	정동춘	710126-*****	남동구 만수2동 5-321 아주아파트 다동 413호
16	박종필	710306-*****	남동구 만수2동 5-19 성신아파트 5동 302호
17	김철환	740324-*****	남동구 만수3동 852-22 나산빌라 B/202
18	이왕규	740511-*****	남동구 만수3동 854-26(1/2)
19	권혁신	690706-*****	남동구 만수4동 주공아파트 411/606
20	박원석	710213-*****	남동구 만수4동 주공아파트 405-604
21	김종국	721114-*****	남동구 만수4동 주공아파트 414/308
22	이상렬	731117-*****	남동구 만수6동 1097-2 초록마을 A/50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97호

IP관리 및 OS패치관리시스템 구입 긴급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IP관리 및 OS패치관리시스템 구입

나. 구매내역 : 별지 참조

다. 기초금액 : ₩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 6. 08(목) 10:00 ~ 2006. 6. 13(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 6. 13(화) 11:00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아.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기획감사실 임용택(☎032-453-2125)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로서 시스템통합(SI)사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계약시 제조사로부터 “제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협약서(Cer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3.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금액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동가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첨부)
- 나. 개찰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행정제재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기타입찰조서등, 관련법규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경리팀 담당 송한수(☎ 032-453-2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699호

장기 미반환 자동차 매각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 조치후 1개월 이상 남동구 견인보관소에 보관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6. 0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6. 06. 08 ~ 2006. 06. 19.
2. 입찰일시 및 장소 : 2006. 6. 20(화) 10:00. 남동구청 간담회장(지하)
3.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811-5 (남동구견인보관소)
4. 매각 대상 자동차 : 18대 (붙임 목록 참조)
5. 입찰 및 매각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개별입찰)에 의한 감정가(예정가)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1인 입찰시는 유찰 처리하며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6. 입찰 참가자의 등록방법
 - 가. 입찰등록 제출서류
 -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 (3) 인감증명서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인감도장 지참
 - 나. 입찰등록기간 : 2006. 06. 19.(18:00한)
 - 다. 입찰등록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주차단속팀)
 - 라. 입찰보증금 : 예정가격의 10/100이상의 금액을 등록신청시 납부
 -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3항)
7. 공매중지 : 매각 진행중에 당해 차주 또는 운전자 등의 공과금 등 제

비용 등을 모두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할 때는 매수 계약전까지 당해 차주 등이 인수 가능함을 아무 조건 없이 인정하여야 함.

8. 공매재산의 하자책임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각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과는 일체 관계없이 견인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일절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의 책임하에 공부열람과 보관 장소인 견인보관소 답사 등을 통해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공매 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및 수수료 등)은 매수자 부담임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름

나. LPG승용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수 있음

다. 매각대금의 사용순서는 ①남동구청의 주·정차위반과태료 ② 견인료 및 보관료 ③압류 및 저당권을 설정한 순위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

라. 매각된 자동차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자 책임하에 이전 등록하여야 함.

마.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바. 매각 대상 자동차 중 영치 등으로 번호판이 없는 경우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하여야 함.

10. 기타 이공고와 관련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기 바라며, 이를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우리구가 지지 않으며, 입찰등록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032-453-2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 대상 목록

연번	차량 번호	연식	차명 (차종)	차대번호	소유자	생년월일	등록 주소	건인 일시	건인 장소	압류 및 저당내역
1	경기1 교7695	1994	프린스	KLAER 1981RB259339	서성권	57.04.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2992-19	2005. 03.07	경기 유동	성남중원구(건설), 성남분당구(건설,세무), 양평군(주인), 대전동구청(교통), 문당경찰서(교통), 성남중부경찰서(교통), 성남수정구(세무,건설,환위), 성남시(교통), 용산구(교지), 마포구(교지), 성남부경찰서(교통), 양평지방경찰서(차량,의무포함).
2	인천31 구1577	1995	쏘니타	KMHCF 31LPSU507360	홍미연 외1	79.12.30	인천 부평 삼산동 157 주공A 102-714	2005. 05.20	한진	부평경찰서(교통,경과), 부평구(교통), 인천시(교관), 인천남구(교통), 남동구(교통).
3	인천31 구2384	1995	쏘니타	KMHCF 31LPSU514831	김병철	64.01.3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1-36	2005. 09.06	수협	남동구(세무,교통,환위), 인천시(교지), 남동경찰서(교통,경과), 인천차량등록사업소(차량), 서초구(주차), 강서구(주차), 고양시(교지), 고양시(교관), 연수구(교통)
4	인천31 구1289	1995	쏘니타	KMHCF 31LPSU459724	여순석	66.08.0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92-7	2005. 09.09	북개천	남동구(세무,교통), 남동경찰서(교통,경과), 대전동구(세무), 광주지법, 국민연금인천지사, 강동구(교관), 인천차량등록사업소(교통)
5	인천80 나2472	1999	프레지오	KNGTB 2822XS635997	황창영	64.02.01	인천 남동구 간석동 88-3 2층동	2005. 09.14	수협	남동구(환위,세무,교통), 서울중구(교지), 국민건강보험인천남동지사(자정), 영등포(교지), 인천차량등록사업소(차량), 남동경찰서(경과), 시흥(교지), 경기안산특구(산교)
6	인천31 무4362	1995	프리미드	KN15P 23E1SK047773	서민호	62.01.15	인천 남동구 민수동 891-23호 2층동	2005. 10.31	천주교	남동구(세무,교통), 동대문구(교통), 국민건강보험인천남동지사(징수)
7	인천7 노5009	1994	포터	KMFFA 17APRU119633	추교원	57.10.21	인천 중구 운남동 556	2005. 11.02	새마을 금고	부평구(교통), 남동구(교통), 인천중구(건설,환경,교통,세무,영종유류출장소), 연수구(교통)
8	인천32 다9766	1992	프리미드	KNADA 22K2NA446200	홍순용	73.12.1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8-15 광성빌라 B01	2005. 11.03	호성 상아	영등포구(교지), 인천남구(세무,교통,환경), 남동구(교통), 부평구(교통,세무), 계양경찰서(경과)
9	인천31 다8964	1994	엘란트라	KMHJF 31JPRU733992	이계영	55.05.10	인천 남동구 민수동 895-3 민수다세대A-B01	2005. 11.03	호성 상아	인천시(교지), 남동구(세무), 인천남구(교통), 국민건강보험공단(자정), 인천시(교통), 부평구(교통), 소사구(경과)
10	경기51 나2445	1996	스포티지	KNAJA 5265TA769439	신현기	51.10.28	경기 시흥시 신현동 762-12 금강빌라3차 302	2005. 11.29	S K	시흥시(세무,시민,환위,교지), 소사구(자정), 인천남구(자정), 구로구(교지), 원미구(자정), 인천서구(자정), 영등포구(교지), 인천남부경찰서(교통), 국민건강보험인천남동지사(자정), 부천시(교지), 인천시(교관)
11	인천31 무2515	1993	프리미드	KNADA 22K2PA499268	조상정	69.05.06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02-14 드림빌라1-B03	2005. 12.06	드림 빌라	인천차량등록사업소(차량), 연수경찰서(교통), 연수구(자정), 동작구(교지), 남동구(세무)
12	인천32 가6901	1996	스포티지	KNAJA 5565TA753085	한규혁	75.03.02	인천 남동구 민수동 5-397 신대동@ 2-602	2005. 12.13	코리 아나	연수경찰서(교통,경과), 인천남구(교통,세무,환위,환복), 남동구(환위,세무)
13	서울43 가9214	1996	티코	KLY3S 11BRTC340505	김상희	58.11.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231-156 삼성파크빌B02	2005. 12.28	진자	강서구(주차,세무,교통,환위), 서대문구(교지), 서울중구(교지), 양천구(자정), 영등포구(교지), 국민연금강서양천지사, 서울강서경찰서(교통), 연수구(교통), 인천남구(교통), 부천원미구(경과), 시흥시(교지)
14	인천34 마7697	1996	쏘니타	KMHCF 31LPTU758498	박승덕	60.01.09	인천 계양구 학전동 산1번지 13/1	2006. 01.05	새말	서울지법북부지원, 인천지법, 인천지법, 인천동구(자정,건교), 인천남구(자정), 부천시(교통,교지), 인천서구(교통), 인천중부경찰서(교통), 계양경찰서(교통), 계양구(교통), 원미구(건설), 서울중구(교지)
15	25조 9376	1993	프린스	KLAER 1981PB143037	김영일	79.09.15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1-21 5/5	2006. 01.09	북개천	
16	86라 2108	1999	아우디	KNR1L2 HEXYT008173	윤치홍	59.01.1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 노빌리안2 805호	2006. 01.09	미니 스틀	부평구(교통), 인천시(교지), 부평경찰서(경과,교통), 영등포구(교지), 남동구(세무,환위,교통), 국민건강보험남동지사(징수), 남구(교통), 고양시(자정,교지)
17	서울2 부9640	1989	아우디	WAUZZZ 89ZKA184897	손찬호	71.03.11	서울시 양천구 목4동 743-17	2006. 01.24	부뚜막	서울중구(교지), 서울양천구(세무,환위), 송파구(교지), 김포시(교통)
18	인천31 고5309	1994	스쿠프	KMHVE 31NPRU193024	김원이	65.12.25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309-18 인성빌라1-101	2006. 02.10	동 사무소	연수구(자정), 남동구(교통,세무), 부천시(교지), 남동경찰서(경과)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700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 [만수고등학교신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06.4.19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교육감
2. 사업의종류 : 학교시설사업<만수고등학교신설사업>
3. 재결 일자 : 2006. 4. 19
4. 공고 기간 : 2006. 6. 8 - 2006. 6. 22
5. 재결서정본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 - 2952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금성정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24
 - 금성기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24
 - 금성기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24
 - 금성기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24
 - 이 보 옥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698 한일빌라 나-203

[관계인] “해당없음”

7. 기 타

재결서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